

— 구미시주민투표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2004.1.29 법률 제7124호로 제정·공포되어 2004.7.30자로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시장은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(제2조)
-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함(제3조)
-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,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(제4조)
 - 읍·면·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, 폐치·분합에 관한 사항
 - 읍·면·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
 -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-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, 지방채,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
 -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
 - 기타 주민의 복리·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
-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1로 함(제5조)
 -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방식과 서명요청권 위임 방식을 정하고(제6조), 서명요청기간은 90일 이내로 함(제7조)
 -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함(제10조)
 - 주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「주민투표청구심의회」의 구성과 심의·의결사항,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정함(제12조)
 - 주민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,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함(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자치행정과-2012(2004.03.11)호
“주민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조례안 및 운용요령”
- 행정자치부 발간(2004.04.22)
“주민투표 업무편람”
 - 주민투표법
 - 주민투표 표준조례안

5. 검토의견

- 행정자치부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에 의거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임.
- 따라서 주민투표의 대상, 투표청구 주민수, 서명요청방식 등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